

政府 施策

자본재 산업 전략품목 선정

- 通産部, 개발자금 · 外貨貸出등 전폭 지원 -

통산산업부는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일환으로 105개 전략품목을 선정, 국산개발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105개 전략품목은 개발지원을 신청한 총 531개 품목을 엄선한 것으로 기계분야 67개, 전기·전자 27개, 소재 11개 품목 등이다.

통산부는 전략품목 선정과 관련, ▲연간 수입액이 150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과다품목 ▲향후 수입선다변화 해제를 대비해 성능과 품질개선이 필요한 수입대항력강화품목 ▲단기간의 육성으로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수출전략품목 ▲선진국에서 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수요확대예상품목 ▲新엔高 10대 유망업종 품목 등으로 세분화해 엄선했다.

유형별 선정품목은 ▲수입과다품목에 대형트랙터·콤바인용 엔진 등 37개 품목 ▲수입대항력강화 품목에 전자동 양면 노광장비 등 26개 품목 ▲수출전략품목에 대형알루미늄 압출형재 등 8개 품목 ▲수출전략품목에 돔스크린 영사시스템 등 26개 품목 ▲신엔고 10대 유망업종의 품목에 워터펌프용 베어링 등 8개 품목 등이다.

통산부는 이번에 엄선된 전략품목의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50억원의 공업발전기금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이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출연자금인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20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품목 개발기업에게는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자금, 공업발전기금 등 개발자금과 외화대출자금 등 수요자금용은 물론 자본재산업육성대책상의 각종 지원이 뒤따른다.

을 소요개발자금에 대해서는 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전기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등에서 개발사업계획서를 심의, 지원대상 업체와 지원규모를 검토해 10월중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품목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품목별로 품목담당관을 지정하고 '전략품목카드'를 만들어 개발추진상황과 판매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개발과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번 전략품목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본재산업의 수입대항력과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돼 수입대체 26억3200만달러, 수출증대 15억5400만달러 등 총 41억86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품목들의 지난해 수입규모는 기계분야 32억8700만달러(대일수입 15억4300만달러), 전기·전자분야 15억5천만달러(대일수입 7억1600만달러), 소재분야 7억500만달러(대일수입 3억9700만달러) 등 총 55억4200만달러(대일수입 26억5600만달러)이다.

'95년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분야	HS. NO	품 목	용도 및 규격·성능	품목유형
전기	8503.00 1000	산업용 AC 모터 (FA AC SERVO Motor)	공작기계, 로봇용 용량 : 50~1,000W	B
	8503.00. 1000	DSP기술을 이용한 고효율 고주파 정류기 (High Frequency Rectifier using DSP Technology)	교류를 직류로 변환 AC110V-220V DC48V, 24V, 100A이하	B
	8504.40. 2010	UPS 및 정류기	전력회로의 역율개선용 3 ϕ , 100KV, 역율 : 0.9	C
	8504.40. 2090	전동기 속도제어 제어기 (speed control for Motor system)	전동기의 속도제어장치	B
	8504.40. 9000	IGBT를 이용한 정지형 인버터	전동차 보조전원장치 GTO, P-TR인버터 보다 고속제어 가능	D
	8515.21. 1090	승용차 차체용 용접 JIG	2,000×3,000×1,800mm 용접타점수 : 100점 /3초	B
	8537.10. 2000	표준형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산업용제조 line, process제어용	A
	8537.10. 9000	공정용 Distributed Control System	자동화 공장의 중앙제어 장치	A

※ 품목유형 : 수입과다품목(A), 수입대항력강화품목(B), 수출전략품목(C), 수요확대예상품목(D), 신엔고 10대 유망업종품목(E)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범위 확대 - 通産部,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운용 규정」 개정 -

통상산업부는 에너지융합리화법 및 동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에너지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을 개정·고시하였다.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에너지기술개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개발된 기술을 생산공정에 최초 적용되는 과정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범적용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간 경쟁에 의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일한 과제에 복수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개발 참여 연구원의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였으며 10개 비목으로 세분화된 사업비 산정비목을 5개로 통합, 단순화함으로써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각종보고 서식의 간소화 등으로 기술개발 수행기관의 개선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기술개발평가위원의 풀제운영 및 사업선정시 기업에 대한 가점 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수 기술개발 관련자에 대하여 수여되는 「올해의 기술인상」등의 포상을 실시하여 기술개발 참여자에 대한 사기 증진책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에너지기술개발과 보급사업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 5백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6년에는 7백70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기술개발의 안정적인 지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협약의 발효와 관련하여 환경 공해물질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 화석에너지의 청정이용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專用工團 무상임대 허용 - 通産部, 국제영업활동지원법 制定案 마련 -

오는 97년부터 외국기업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무상임대가 가능해지고 시설재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동반해외투자, 해외투자기업간 부품상호구매 등 우리나라 기업이나 사업자간 공동국제영업활동이나 국산부품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에 대한 조세·금융·보험 등에 관한 지원시책이 크게 강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제영업활동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우선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전용공단 입주기업에 토지나 건물을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임대부지에 대해서도 공장건축물, 사무실, 후생복지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예외를 부여해 시설재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우수한 외국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수외국인에 대한 '특별신분증제도'를 도입, 화교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특별신분증 보유자는 사실상 국내영주가 가능하고 비자연장단위가 3년으로 확대되는 한편 1세대 1주택에 한해 200평 이내의 토지취득 허용, 개인자격으로 의료보험가입 허용, 통상분야나 국립연구기관 등에서의 부분적인 공직 허용 등으로 국내체류에 따른 불편사항이 크게 완화된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및 전략적제휴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기업간 동반해외투자 ▲국내기업간 기술제휴 등 공동협력협정 체결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해외투자 기업간 부품 상호구매 ▲외국에서의 공업단지 개발 ▲국내 유휴시설 및 기자재의 해외이전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우리나라 부품 및 원자재 수출 등에 조세·금융·보험상의 지원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희망기업이나 해외투자 희망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안내 및 민원사무처리, 정보제공, 합작투자알선, 고충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영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의 국제영업활동이 생산, 고용, 수출·입, 기술개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영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제영업활동지원법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나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상정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오는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통상산업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5-126호, '95. 9. 6)했다.

1. 개정이유

공장설립신고·허가·승인 등 4개의 유형을 「공장설립승인」으로 통합하고 공장설립승인시 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하는 등 그동안 발굴된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을 법제화하고, 공업단지 안에 공장관련 시설에 대하여도 입주를 허용하는 등 산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업의 경쟁력확보에 도움을 주도록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장설립예정지의 지역·토지형질 및 용도지역변경 필요여부에 따라 공장설립신고·허가·승인 등 4개로 공장설립 인·허가 유형이 구분됨으로써 어떤 유형으로 설립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어떤 유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설립가능 여부가 다르게 결정되는 등 민원인에게 혼란과 행정의 통일성에 저해를 가져옴에 따라 이를 「공장설립승인」 제도로 일원화 함.
- 나.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하는 공장설립관련 타법령의 인·허가 사항을 확대하고 특히, 건축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하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획기적으로 도모함.
- 다. 수도권소재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라.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설립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이 아파트형공장 설립시 자금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
- 마. 공업단지내 공장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만이 입주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제조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설인 연구소, 폐기물처리시설, 물류시설 및 정보·통신관련업종에 대하여도 입주를 허용함.

- 바. 국가공업단지의 경우, 현재 개발된 공업단지에 대한 분양업무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위탁을 받아 공업단지관리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도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사. 외국인 전용공단과 지방공단중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물등 영구임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아. 공장건축규모에 알맞는 공장용지만을 확보토록 하는 기준공장면적을 제도의 이행확보를 위해 기준초과용지(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강제매각제도와 각종 세법에서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강제매각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5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통상산업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배치과 503-9494)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방 中企 8천억원 지원

정부는 산업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제와 시간근무제(파트타임제)를 도입하는 대신 논란을 빚어온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는 보류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의 약 두 배인 8천억원으로 늘리고 非제조업에서 제조업 유통업 물류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노동부는 최근 열린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산업체근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수를 올해 3만5천명에서 내년에 5만2천명으로 늘리고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격도 학력에 따라 기능사2급이상에서 학력 구분없이 기능사보 이상이면 가능토록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中企육성자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을 올해 2천5백억원에서 내년엔 4천억원, 中企공제사업기금에는 2백억원에서 4백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제지원책으로는 장기결손 중소기업자가 부채를 갚기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를, 유통 물류 지식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각각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輸出入通關 申告制로

— 財經院, 관세법개정안 내년 7월1일 시행방침 —

재경경제원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 운송허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통관절차에 따른 기업의 물류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규제위주의 관세행정제도를 수출입자 편의 중심으로 전면 변경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재경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관세청의 관련규정·요령등을 개정,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경우 수입화물의 입항후 반출까지의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15일에서 2~3일로 단축되고 기업의 물류비용절감효과는 연간 4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경원은 개정안에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신고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수출입업자가 신고를 한 다음 세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를 받는 절차를 없애므로 수출입업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려는 것이다.

재경원은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허가제도를 없애 수출자는 보세운송면허 절차를 밟지 않고 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출신고후 30일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선적하도록 했다. 현재는 보세운송허가를 받은 다음 보세운송기간내(통상 1주일)에 보세운송하여 보세구역에 반입·선적하도록 돼 있다. 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자의 범위를 확대, 화주·관세사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자에게 완제품을 공급하는 완제품공급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완제품공급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완제품공급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할 때까지의 업무처리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의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재경원은 수입물품의 보세구역반입 및 보세운송 허가제도를 신고제로 변경, 수입자는 신고만으로 반입 및 운송을 할 수 있으며 보세운송 발송보고도 생략하도록 했다.

특히 입항전수입신고제도를 도입,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류를 구비하면 필요시 수입화물이 입항되기 이전에 언제든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를 도입, 수입자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바로 물품을 반출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는데 이 경우 수입자가 물품반출전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國內기업 M&A 허용

— 財經院, ‘外國人투자환경개선방안’ 마련 —

오는 97년부터 외국기업에게 국내기업 M&A(매수및 합병)가 허용된다. 또 외국인투자 인가대상업종(43개)에 대한 인가제가 폐지되어 외국인투자가 전면 신고제로 변경된다. 이에 앞서 금년말경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인정과세 ▲고정사업장과세 ▲이전가격제세 운영등 주요 과세기준이 보완·정비되는 한편, 앞으로 수시 실태확인·기획조사등 세무당국 편의에 따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외국인투자가가 M&A방식에 의해 내국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지만 외자도입법령의 개정을 거쳐 오는 97년 1월부터 피인수기업 경영진(대주주)의 동의하에 株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가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가 피인수기업 경영진의 동의없이 소액지수의 지분을 사모으는등의 ‘비우호적인 방식’은 일단 불허하되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정책, 내국인에 의한 비우호적인 M&A허용정책(97년)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 국가기간산업, 중요언론매체관련사업등의 경우 우호적인 방식조차도 불허키로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가가 국내에 진출하려면 신주식취득방식 또는 창업투자방식을 통해야만 하며 구주식취득방식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총 1041개)중 인가대상업종(43개)의 인가제를 외자도입법령의 개정을 거쳐 오는 97년 1월부터 신고제로 전환, 외국인투자 개방업종 모두에 대해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국세청의 ‘외국·외투 법인조사지침’등의 개정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주요한 과세기준을 정비·보완하고 무리한 과세를 지양하기로 했다.

品質經營모범 100社 선정

— 工振廳, 1년간 KS事後管理등 면제 —

공업진흥청은 품질경영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품질경영 최우수기업 100개사를 엄선, 95년도 ‘품질경영 100選’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품질경영 100선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품질방침을 설정하고 전사원이 합심해 품질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높은 성장과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품질과 기술수준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공진청은 심사기준으로 품질경영 방침 및 전략, 품질경영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사내표준화, 교육훈련체계 확립, 연구개발, 품질보증체계 및 고객관리 등 경영전반에 걸쳐 품질혁신체계를 갖추고 전사적으로 품질경영이 추진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품질경영 100선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품질대상과 품질경영상 포상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앞으로 1년간 KS 및 등급공장 사후관리면제 등 혜택이 부여되며 단체수익계약시 우대를 받는다.

■ 품질경영 100選 선정기업

분 야	업 체 명	대 표 자	품 목 명
기계제품 (9)	(株)慶東보일러 (株)起亞機工 南亮産業(株) 大宇重工業(株) 變龍重工業(株) LG産電(株) 韓國重工業(株) 한화機械(株) 現代엘리베이터(株)	노 재 훈 김 재 복 박 윤 소 석 진 철 김 기 호 이 회 종 이수강 송재복 박규직	보일러·온수기 공작기계·산업기계 가스용기·소화설비 디젤엔진·발전기 선박용 디젤엔진 자판기, 쇼테이스 발전설비 배어링등 산업기계 엘리베이터
전기기구 (3)	啓洋電機(株) 동양매직(株) 유호電機工業(株)	이상익 이영서 유문영	전동공구, 모터 가스레인지·세탁기 수·배전반
전자 및 전기 기기 (11)	大宇電子(株) 斗山電子(株) 三星電子(株) 三星電管(株) 三鎿電子工業(株) 三進變壓器(株) 世邦電池(株) LG電線(株) LG電子(株) (株)인켈 現代電子産業(株)	양재열 이정훈 김광호 윤종용 변동준 김문환 김성두 권문구 구자홍 최석한 김주용	냉장고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 A/V, 정보통신기기 칼라브라운관 콘덴서 변압기 축전지 전선류 A/V, 정보·통신기기 오디오제품 A/V, 가전제품